

사망 장애 보험 (Death and Disability Plan)

사망 혜택 (Death Benefits)

사망 장애 보험(Death and Disability Plan)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수 없을 경우에 가입자와 가족들에게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여기서는 사망 장애 보험의 사망 혜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장애 혜택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사망 장애 보험: 장애 혜택을* 참고하십시오.

운영 방식

사망 장애 보험의 사망 혜택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이 겪게 되는 예기치 못한 수입 감소로부터 재정적 보호해 주며 몇 가지 유형의 혜택을 포함합니다.

보상금액

사망 보험금액과 유형은 가입자 사망 시 고용 상태, 즉 현역 가입자, 장애 혜택 수혜자, 은퇴자 또는 연금 수령권은 있으나 더 이상 PC(USA) 교회/고용기관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지속 혜택 (Salary continuation benefit)

가입자가 현역으로 사역 중 일때 또는 장애 혜택을 받고 있을 때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액은 사망 혜택 기준 금액*과 동일하며, 12개월로 나누어 일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은퇴자 사망 시, 사망 혜택은 장례 지원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이 가입자의 은퇴일과 연계됩니다.

- 은퇴하고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액은 사망 혜택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은퇴 후 매 분기(3개월)마다 1/12씩 줄어드는 액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 은퇴하고 3년 후에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액은 \$10,000이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수혜자를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지정된 수혜자를 매년 검토하여 가입자의 의도 대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임 후 연금 수령권을 가지고, 연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Rule of 70을 충족한다면 사망 보험 수혜자는 \$10,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2007년 1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한 은퇴자가 사망 한 경우, 배우자는 \$10,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 지급 사망 혜택 (Lump-sum death benefit)

현역으로 사역 중,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 중 또는 Transitional Participation Plan를 통해 사망 장애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이 사망 혜택은 일시금으로 사망 혜택 기준 금액과 \$110,000* 중의 적은 액수를 가입자의 사망 나이를 기준으로 백분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사망 장애 보험 (Death and Disability Plan)

일괄 지급 사망 보험액 비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망 나이	%	사망 나이	%
31세 미만	400	41	190
31	380	42	180
32	360	43	170
33	340	44	160
34	320	45	150
35	300	46	140
36	280	47	130
37	260	48	120
38	240	49	110
39	220	50+	100
40	200		

퇴직 후 연금수령권이 있거나 더 이상 PC(USA) 교회/고용기관에서 사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괄 지급 사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 혜택 (Children's education benefit)

현역이거나 장애 혜택을 받고 있거나 또는 현역에서 바로 은퇴한 후 사망한 경우, 가입자의 25세 미만 자녀에게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교 최초 4년 동안 자녀당 매년 \$10,000씩 최대 \$40,000까지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보조금을 해당 자녀에게 12 개월 (가을 학기 10월 ~ 3월, 봄학기 4월 ~ 9월) 동안 6회로 나눠 일정 보조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사망 혜택 기준 금액은 연금 가입 기준(연간 실제 급여 또는 목회지 중간 급여의 25% 중 더 큰 금액으로서, 미 국세청 최대한도액) 또는 해당 중간 급여(비정규직 급여는 비례 배분)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1년도 미 국세청 (IRS) 최대한도액은 \$290,000입니다. 최대 일괄 사망 혜택 기준액은 \$110,000입니다.

생존 담보 혜택(Living needs benefit)

말기 질환이 있는 경우, 생존 담보 혜택은 사망 전 말기 투병 기간 동안 여러 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망 보험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역인 경우 예상 여명이 24개월 이하이고, 사망 장애 보험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말기 상태가 의도적인 자해와 관련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속 혜택(salary continuation benefit)의 최대 100%에 대한 계리적 현가(actuarial present value), 및/또는
- 일괄 지급 사망 혜택(lump-sum death benefit)의 75% (사망 혜택 기준 금액과 \$110,000* 중 낮은 금액에 가입자의 사망 나이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은퇴자인 경우, 최대 \$10,0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존 담보 혜택은 일시금으로 가입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해당 지급액은 가입자의 사망 시 수혜자(들) 혹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에서 그만큼 차감됩니다.



사망 장애 보험 (Death and Disability Plan)

* 사망 혜택 기준 금액은 연금 가입 기준(연간 실제 급여 또는 목회자 중간 급여의 25% 중 더 큰 금액으로서, 미국세정 최대한도액) 또는 해당 중간 급여(비정규직 급여는 비례 배분)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1년도 미국세정(IRS) 최대한도액은 \$290,000입니다. 최대 일괄 사망 혜택 기준액은 \$110,000입니다.

혜택 신청

가족 또는 배우자가 가입자의 사망을 연금국에 알리면, 연금국이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청구 양식을 보내드리며, 작성된 신청서를 연금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수혜자 지정

보험금이 가입자의 의도대로 지급되도록 하려면, **Benefits Connect**에 접속해서 현재 수혜자와 지급 비율을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수혜자 변경 및 지급 비율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교회/고용기관이 가입시키며 가입자는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 이외에 달리 조치를 취할 것이 없습니다.

비용/기여금

교회/고용기관이 사망 장애 보험 부담금 전액을 지불하며, 가입자는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정보

사망 장애 보험에 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pensions.org/members를 참고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연금국 전화 800-773-7752 (800-PRESPLAN)으로 연락하십시오.

수혜자 선정

수혜자를 지정하여 가입자의 의도대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 보험

유족을 위한 추가 재정 보호를 위해서 추가 사망 보험(Supplemental death benefit)을 고려하십시오.

신청

교회/고용기관에서 가입시킵니다. 가입자는 어떤 조치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플랜의 급여 및 제한에 대한 전체적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시된 정보와 Presbyterian Church (미국)의 베네핏 플랜(Benefits Plan) 조항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플랜 약관이 적용됩니다. 플랜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려면 pensions.org를 방문하거나 800-773-7752 번 (800-PRESPLAN) 으로 연금국에 전화하십시오.

